

사회봉사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회봉사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관의 선정
2. 사회봉사활동 참여자의 접수 및 연결
3. 사회봉사활동의 지도 및 교육
4. 사회봉사활동의 홍보
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참여대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사회봉사센터는 교학지원처에 두고, 교학지원처에서 지원한다.<개정 2021.7.22>

- ② 사회봉사센터에 전담교수를 두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개발 및 평가를 한다.
- ③ 사회봉사센터에 담당직원을 두어 사회봉사활동 기관을 선정한다.
- ④ 사회봉사센터에 담당조교를 두어 사회봉사활동 참여자의 접수를 담당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설치) 사회봉사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인 교학지원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봉사센터장이 되며 센터를 총괄한다.
2. 위원 중에 호선에 의해 선임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위원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동문 및 지역주민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회봉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사회봉사센터 규정 개폐안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 학기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사회봉사센터에서 관장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11-4-3 사회봉사센터 규정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